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경제지원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경제지원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합니다.

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3. 4. 11.부터 5. 1.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3. 5. 18.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오니,
-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00923067
--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5.26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경제지원과장)

1. 제안이유

-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05년 설치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4. 11.~5. 1.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 심사: 의견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6) 조례·규칙심의결과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제36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)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
 2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
 3.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 4.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나.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
 - 다. 소비자단체의 대표
 - 라.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마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
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·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-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,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